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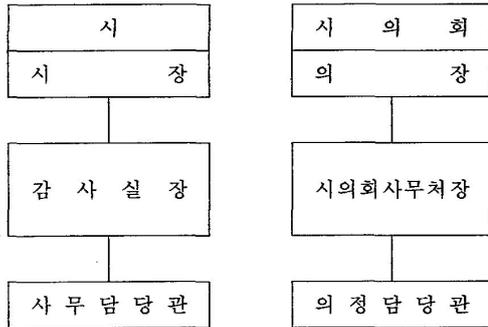
□진정민원중 자치구소관 사항은 해당구에 이  
 접 처리토록 하고 시에서는 광역사무 관련  
 민원 직접조사 처리  
 □집단민원 발생 즉시 신속한 원인 파악과  
 대화통로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심  
 의위원회의 적극 활용  
 □「120민원전화」 상담직원은 해당업무에 가장  
 정통한 직원으로 배치  
 □민원 조정력이 뛰어난 행정경험 인력을 충  
 원 배치  
 □민원처리 실태 감사 정례화 민원처리수준  
 향상

.....  
 이상으로 民願擔當官室 業務報告를 마치겠습  
 니다.  
 감사합니다.  
 ○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.  
 다음은 公職者倫理委員會 事務擔當官 나오셔  
 서 報告해 주십시오.  
 ○公職者倫理委員會 事務擔當官 文永模 公職者  
 倫理委員會 事務擔當官 文永模입니다.  
 먼저 一般現況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.  
 .....  
 (報 告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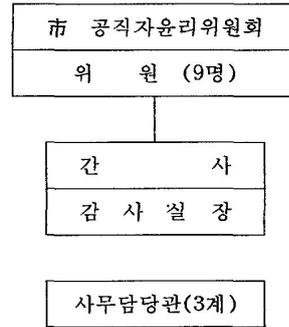
I. 一 般 現 況

□事務機構

【등 록 기 관】



【심 사 기 관】



□人員構成

○위원회 위원 구성 : 9명(외부위원 5명, 내  
 부위원 4명)  
 · 외부위원 :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 
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 
 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

위촉  
 · 내부위원 : 시의회의장 추천을 받은 시의  
 원 2명과, 1급이상 시 소속  
 공무원 2명을 위촉 또는 임  
 명

○사무직원 현황 : 현원 22명

계	직 급 별						비 고
	4급	5급	6급	7급	8급	기능직	
22명	1	3	5	10	2	1	

※간사 및 사무직원은 시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

□財産登録対象者 現況									
○총괄									
계	등록의무자	의무면제자	퇴직자	비고					
1,688명	1,475명	32명	181명						
○등록의무자 내역별 현황 (기관별)									
구분	계	시의회	본청·사업소	공사					
계	1,475명	162	1,284	29					
공개자	165명	148	11	6					
비공개자	1,310명	14	1,273	23					
(직급별)									
계	시장	시의원	정무직	1급	교수	2~4급	5급이하	공사임직원	
1,475명	1	147	3	7	10	264	1,014	29	
<p>II. 公職者 財産登録·審査制度 —'93.8.12.부터 시행—</p> <p>□公職者 財産登録</p> <p>○재산등록 의무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</li> <li>· 4급이상공무원, 5급이하 소방·감사·세무등 특정분야 공무원</li> <li>· 대학총장·보직교수, 서울시 지방공사의 장 및 임원</li> </ul> <p>○재산등록(신고)의 유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초 등록: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 전재산 등록</li> <li>· 정기변동신고: 매년 1월중 전년도 12.31 기준 변동사항 신고</li> <li>· 수시변동신고: 전보·퇴직등 신분변동일기 1월이내 변동신고</li> </ul> <p>□登録財産 公開·審査</p> <p>&lt;공개자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대상: 시장, 시의원, 정무직·1급공무원, 대학총장, 공사사장</li> <li>○공개방법: 등록 또는 변동신고시 1월이내 시보에 공개</li> <li>○심사내용: 부동산, 금융재산, 기타재산의 사실조화 및 확인</li> </ul>					<p>○심사기한: 공개후 3월이내 (비공개자)</p> <p>○심사내용: 공개자와 동일</p> <p>○심사기한: 당해년도 내</p> <p>III. 委員會運營 實績</p> <p>□委員會 運營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회의개최-16회('94년도 15회)</li> <li>○안전처리 [ 32건('94년도 30건) 원안 21건, 수정 9건, 기타 2건</li> <li>○회의참석-9명중 8.1명(90%)</li> </ul> <p>□登録財産 審査關聯 主要業務推進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심사 연인원-총 1,688명(가족포함 8,271명) (공개자 342, 비공개자 1,346)</li> <li>○관계기관조화-735개 기관(부동산 72, 금융 621, 기타 42)</li> <li>○소명요구-308명(공개자 120명, 비공개자 188명)</li> <li>○심사결과처리-101명(보완명령 92, 시정지시 9)</li> </ul> <p>※실무 소위원회 운영: 반별 위원 2명(4</p>				

<p>개반 8명)</p> <p>□其他 委員會 主要活動事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연회 개최</li> <li>○사무기구 확대 개편 (1계 11명→담당관, 3계 22명)</li> <li>○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 발급 (76명)</li> </ul> <p>.....</p> <p>參考로 말씀드리면 이 財産公開確認書는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49條第4項의 規定과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2 規定에 의해서 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 公開에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V. 向後 推進計劃</p> <p>□登錄財産 審査-'95.9~12.31까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대상인원 : 1,688명(공개자 342명, 비공개자 1,346명)</li> <li>○주요내용 : 등록재산의 성실신고여부 등</li> </ul> <p>□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대상 : 외부위원 4명</li> <li>○방법 :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</li> <li>※'95.9.12 외부위원의 2년 임기만료</li> </ul>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다음은 監査室 所管業務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.</p> <p>一括質問, 一括答辯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金永俊委員, 質疑하여 주십시오.</p> <p>○金永俊委員 恩平3選舉區 새정치국민회의 金永俊委員입니다.</p> <p>막중한 業務에 監査室長 이하 全 公務員, 여기 앉아 계신 公務員 여러분, 노고가 많았습니다. 本委員이 꼭 이를 貫徹시키기 위해서 첫번째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第79回 臨時會 당시 監査委員會制度 導入件에 대하여 本委員이 質疑한 監査委員 構成에 있어 監査室長은 業務報告를 할 때, 本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市議員 參與를 條例制定時 檢討 豫定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本委員은 물론 本 委員會에서 상당히</p>	<p>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本 監査委員會制度 導入 推進에 第79回 臨時會 당시 監査1擔當官이 發令이 안 났기에 主務課長이 꼭 알아야 될 事案으로 판단되므로 本件 處理 當爲 性 定立을 위하여 再質疑하니 主務課長인 監査1擔當官이 答辯하기 바랍니다.</p> <p>監査委員會의 推進目的에 대하여 自體監査機構  독립성과 專門性 補完 및 市民參與  기회 확대로 그야말로 서울特別市 監査機能의 信賴 提高 내지는 活性化를 위하여 첫번째, 監査委員會의 성격은 소위 諮問機關인지 議決機關인지?</p> <p>두번째, 委員會의 構成에 있어서 여기에 外部專門家, 市民代表, 言論界 및 學界人士와 2·3級 公務員이라고 할 때, 市民代表에 있어 千百萬 市民代表性이 있는 서울市議員이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의 실천여부를 얘기해 주시고,</p> <p>또한 이 構成에 있어서 제 個人的인, 私 的인 意見입니다만 그간에 前近代的인 發想으로써 소위 예컨대 여기서 2·3級 公務員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局長級만 委員會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간의 通例였는데 이를 내가 볼 때는, 本委員이 볼 때는 實務者인 6級 主事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局長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, 言論機關이라 할 때 예를 들면 新聞社 社長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記者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, 다양하게 構成 되어야 되는 것이 소위 이 組織의 活性化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見解는 무엇이며,</p> <p>세번째, 本 報告書에서 條例案 提出 시기를 95年 11月이라 예정했는데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5條에 있어서, 제가 이것을 읽어 봤습니다. 이를 조속히 貫徹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晚時之歎이 있으나 95年 11月 안으로 꼭 貫徹하여 변화하는 소위 달라지는 監査室像, 다시 말해서 民選市長의 서울特別市, 구태에서 벗어난 議決機關인 서울市議會像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.</p> <p>本件,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 8月 28日字 發令받으신 監査1擔當官이 答辯하기 바랍니다.</p> <p>이상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.</p>
--	---

<p>개반 8명)</p> <p>□其他 委員會 主要活動事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연회 개최</li> <li>○사무기구 확대 개편 (1계 11명→담당관, 3계 22명)</li> <li>○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 발급 (76명)</li> </ul> <p>.....</p> <p>參考로 말씀드리면 이 財産公開確認書는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49條第4項의 規定과 公職者倫理法 第10條의2 規定에 의해서 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 公開에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V. 向後 推進計劃</p> <p>□登錄財産 審査-'95.9~12.31까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대상인원 : 1,688명(공개자 342명, 비공개자 1,346명)</li> <li>○주요내용 : 등록재산의 성실신고여부 등</li> </ul> <p>□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대상 : 외부위원 4명</li> <li>○방법 : 시장이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</li> <li>※'95.9.12 외부위원의 2년 임기만료</li> </ul> <p>.....</p> <p>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다음은 監査室 所管業務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.</p> <p>一括質問, 一括答辯式으로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金永俊委員, 質疑하여 주십시오.</p> <p>○金永俊委員 恩平3選舉區 새정치국민회의 金永俊委員입니다.</p> <p>막중한 業務에 監査室長 이하 全 公務員, 여기 앉아 계신 公務員 여러분, 노고가 많았습니다. 本委員이 꼭 이를 貫徹시키기 위해서 첫번째 質疑를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第79回 臨時會 당시 監査委員會制度 導入件에 대하여 本委員이 質疑한 監査委員 構成에 있어 監査室長은 業務報告를 할 때, 本委員會 構成에 있어서 市議員 參與를 條例制定時 檢討 豫定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本委員은 물론 本 委員會에서 상당히</p>	<p>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. 本 監査委員會制度 導入 推進에 第79回 臨時會 당시 監査1擔當官이 發令이 안 났기에 主務課長이 꼭 알아야 될 事案으로 판단되므로 本件 處理 當爲性 定立을 위하여 再質疑하니 主務課長인 監査1擔當官이 答辯하기 바랍니다.</p> <p>監査委員會의 推進目的에 대하여 自體監査機構  독립성과 專門性 補完 및 市民參與 기회 확대로 그야말로 서울特別市 監査機能의 信賴提高 내지는 活性化를 위하여 첫번째, 監査委員會의 성격은 소위 諮問機關인지 議決機關인지?</p> <p>두번째, 委員會의 構成에 있어서 여기에 外部專門家, 市民代表, 言論界 및 學界人士와 2·3級 公務員이라고 할 때, 市民代表에 있어 千百萬 市民代表性이 있는 서울市議員이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데 이의 실천여부를 얘기해 주시고,</p> <p>또한 이 構成에 있어서 제 個人的인, 私的인 意見입니다만 그간에 前近代的인 發想으로써 소위 예컨대 여기서 2·3級 公務員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局長級만 委員會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간의 通例였는데 이를 내가 볼 때는, 本委員이 볼 때는 實務者인 6級 主事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局長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, 言論機關이라 할 때 예를 들면 新聞社 社長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記者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, 다양하게 構成되어야 되는 것이 소위 이 組織의 活性化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見解는 무엇이며,</p> <p>세번째, 本 報告書에서 條例案 提出 시기를 95年 11月이라 예정했는데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5條에 있어서, 제가 이것을 읽어봤습니다. 이를 조속히 貫徹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晩時之歎이 있으나 95年 11月 안으로 꼭 貫徹하여 변화하는 소위 달라지는 監査室像, 다시 말해서 民選市長의 서울特別市, 구태에서 벗어난 議決機關인 서울市議會像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.</p> <p>本件,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이번에 8月 28日字 發令받으신 監査1擔當官이 答辯하기 바랍니다.</p> <p>이상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.</p>
--	---